



국내여행실손의료보험 보통약관

2013.04.01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담보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국내여행실손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통원의료비의 총 4개 이내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	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u>상해</u> 로 인하여 <u>병원</u> 에 <u>입원</u>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u>상해</u> 로 인하여 <u>병원</u> 에 <u>통원</u> 하여 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u> 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입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u>질병</u> 으로 인하여 <u>병원</u> 에 <u>입원</u>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통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u>질병</u> 으로 인하여 <u>병원</u> 에 <u>통원</u> 하여 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u> 를 받은 경우에 보상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붙임>과 같으며 해당 용어는 이 약관에서 밑줄을 그어 표시합니다.

제2장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각각 보상 또는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종목	보상하는 사항	
(1) <u>상해입원</u>	① <u>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u> 에 <u>입원</u>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u>입원의료비</u> 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u>상해당</u>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보상금액
	표준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 <u>비급여</u>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만, 20%해당액이 <u>계약일</u> 또는 매년 <u>계약해당일</u> 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담보종목	보상하는 사항														
(1) 상해입원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u>기준병실</u> 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u>입원기간</u>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u>입원일수</u> 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선택 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과 ‘ <u>비급여</u>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다만, 10%해당액이 <u>계약일</u> 또는 매년 <u>계약해당일</u> 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u>기준병실</u> 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u>입원기간</u>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u>입원일수</u> 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② 제1항의 <u>상해</u>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u>상해당</u>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u>회사</u>는 하나의 <u>상해</u>(동일 <u>상해</u>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u>상해</u>로 봅니다)로 인한 <u>입원의료비</u>를 최초 <u>입원일</u>로부터 365일까지(최초 <u>입원일</u>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동일한 <u>상해</u>로 인하여 최초 <u>입원일</u>로부터 365일을 넘어 <u>입원</u>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u>상해</u>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table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25%;"></td>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25%; background-color: #cccccc;">보상대상기간 (365일)</td>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25%; background-color: #cccccc;">보상제외 (90일)</td> <td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25%; background-color: #cccccc;">보상대상기간 (365일)</td> </tr> <tr> <td>↑ <u>계약일</u> (2013.1.1)</td> <td>↑ 최초 <u>입원일</u> (2013.3.1)</td> <td>↑ (2014.2.28) 2014.3.1.부터 보상제외</td> <td>↑ (2014.5.29) 2014.5.30.부터 보상재개</td> </tr> <tr> <td></td> <td></td> <td></td> <td>↑ (2015.5.29) 2015.5.30.부터 보상제외</td> </tr> </table> ⑤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입원</u>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u>입원</u>에 대하여는 <u>보험기간</u>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u>보험기간</u>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동일 회사 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u>보험기간</u> 연장으로 간주					보상대상기간 (365일)	보상제외 (90일)	보상대상기간 (365일)	↑ <u>계약일</u> (2013.1.1)	↑ 최초 <u>입원일</u> (2013.3.1)	↑ (2014.2.28) 2014.3.1.부터 보상제외	↑ (2014.5.29) 2014.5.30.부터 보상재개				↑ (2015.5.29) 2015.5.30.부터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365일)	보상제외 (90일)	보상대상기간 (365일)												
↑ <u>계약일</u> (2013.1.1)	↑ 최초 <u>입원일</u> (2013.3.1)	↑ (2014.2.28) 2014.3.1.부터 보상제외	↑ (2014.5.29) 2014.5.30.부터 보상재개												
			↑ (2015.5.29) 2015.5.30.부터 보상제외												



담보종목	보상하는 사항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병원</u>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u>입원의료비</u>를 계산합니다.						
(2) <u>상해통원</u>	① <u>회사</u>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상해</u>로 인하여 <u>병원</u>에 <u>통원</u>하여 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u>를 받은 경우에는 <u>통원의료비</u>로서 매년 <u>계약해당일</u>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u>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u> 및 <u>처방조제비</u>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보 상 한 도</th></tr> </thead> <tbody> <tr> <td>외래</td><td>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u>비급여</u>^{주1)}’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u>외래</u>의 <u>보험가입금액</u>^{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해당일</u>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td></tr> <tr> <td>처방조제비</td><td>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u>비급여</u>^{주1)}’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u>처방조제비</u>의 <u>보험가입금액</u>^{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해당일</u>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td></tr> </tbody> </table> 주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주2) <u>외래</u> 및 <u>처방조제비</u>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 <u>비급여</u> ^{주1)} ’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u>외래</u> 의 <u>보험가입금액</u> ^{주2)}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해당일</u> 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 <u>비급여</u> ^{주1)} ’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u>처방조제비</u> 의 <u>보험가입금액</u> ^{주2)}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해당일</u> 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 <u>비급여</u> ^{주1)} ’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u>외래</u> 의 <u>보험가입금액</u> ^{주2)}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해당일</u> 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 <u>비급여</u> ^{주1)} ’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u>처방조제비</u> 의 <u>보험가입금액</u> ^{주2)}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해당일</u> 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담보종목		보상하는 사항		
(2) 상해통원	표준형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외래 (외래제비 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택형	외래 (외래제비 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동일회사 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담보종목	보상하는 사항																		
(2) 상해통원	<보상기간 예시> <table><tr><td colspan="2">보상대상기간 (1년)</td><td colspan="2">보상대상기간 (1년)</td><td colspan="2">보상대상기간 (1년)</td><td colspan="2">추가보상 (180일)</td></tr><tr><td>↑</td><td>계약일 (2013.1.1)</td><td>↑</td><td>계약해당일 (2014.1.1)</td><td>↑</td><td>계약해당일 (2015.1.1)</td><td>↑</td><td>계약 종료일 (2015.12.31)</td><td>↑</td><td>보상종료 (2016.6.28.)</td></tr></table>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계약일 (2013.1.1)	↑	계약해당일 (2014.1.1)	↑	계약해당일 (2015.1.1)	↑	계약 종료일 (2015.12.31)	↑	보상종료 (2016.6.28.)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계약일 (2013.1.1)	↑	계약해당일 (2014.1.1)	↑	계약해당일 (2015.1.1)	↑	계약 종료일 (2015.12.31)	↑	보상종료 (2016.6.28.)									
	③ 하나의 <u>상해</u> 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u>의료기관</u> 에 2회 이상 <u>통원</u> 치료시(하나의 <u>상해</u> 로 <u>약국</u> 을 통한 2회 이상의 <u>처방조제</u> 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u>처방</u> 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u>상해</u> 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⑤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u>처방조제비</u> 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u>처방조제비</u> 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병원</u> 또는 <u>약국</u> 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u>통원의료비</u> 를 계산합니다.																			
(3) 질병입원	① <u>회사</u> 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u> 에 <u>입원</u>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u>입원의료비</u> 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보상금액</th></tr><tr><td rowspan="2">표준형</td><td><u>입원실료</u>, <u>입원제비용</u>, <u>입원수술비</u></td><td>‘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만, 20%해당액이 <u>계약일</u> 또는 매년 <u>계약해당일</u>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td></tr><tr><td>상급병실료 차액</td><td><u>입원시</u> 실제 사용병실과 <u>기준병실</u>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u>입원기간</u>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u>입원일수</u>로 나누어 산출합니다)</td></tr><tr><td>선</td><td><u>입원실료</u>,</td><td>‘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td></tr></table>	구 분		보상금액	표준형	<u>입원실료</u> , <u>입원제비용</u> , <u>입원수술비</u>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만, 20%해당액이 <u>계약일</u> 또는 매년 <u>계약해당일</u> 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u>입원시</u> 실제 사용병실과 <u>기준병실</u> 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u>입원기간</u>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u>입원일수</u> 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선	<u>입원실료</u>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구 분		보상금액																
	표준형	<u>입원실료</u> , <u>입원제비용</u> , <u>입원수술비</u>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만, 20%해당액이 <u>계약일</u> 또는 매년 <u>계약해당일</u> 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u>입원시</u> 실제 사용병실과 <u>기준병실</u> 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u>입원기간</u>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u>입원일수</u> 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선	<u>입원실료</u>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담보종목		보상하는 사항																															
택 형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다만, 10%해당액이 <u>계약일</u> 또는 매년 <u>계약해당일</u> 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u>기준병실</u> 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u>입원기간</u>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u>입원일수</u> 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u>질병입원</u> ④ <u>회사</u>는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u>의사</u>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u>입원의료비</u>는 최초 <u>입원일</u>로부터 365일(최초 <u>입원일</u>을 포함합니다)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최초 <u>입원일</u>로부터 365일을 넘어 <u>입원</u>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u>입원</u>으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table><tr><td></td><td></td><td>보상대상기간 (365일)</td><td>보상제외 (90일)</td><td>보상대상기간 (365일)</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u>계약일</u> (2013.1.1)</td><td><u>최초 입원일</u> (2013.3.1)</td><td>(2014.2.28)</td><td>(2014.5.29)</td><td>(2012.5.29)</td><td></td></tr><tr><td></td><td></td><td>2014.3.1.부터</td><td>2014.5.30.부터</td><td>2012.5.30.부터</td><td></td></tr><tr><td></td><td></td><td>보상제외</td><td>보상재개</td><td>보상제외</td><td></td></tr></table> ⑤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입원</u>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u>입원</u>에 대하여는 <u>보험기간</u>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u>보험기간</u>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동일회사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u>입원의료비</u>를 계산합니다. ⑦ 동일한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보상대상기간 (365일)	보상제외 (90일)	보상대상기간 (365일)		↑	↑	↑	↑	↑	↑	<u>계약일</u> (2013.1.1)	<u>최초 입원일</u> (2013.3.1)	(2014.2.28)	(2014.5.29)	(2012.5.29)				2014.3.1.부터	2014.5.30.부터	2012.5.30.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365일)	보상제외 (90일)	보상대상기간 (365일)																													
↑	↑	↑	↑	↑	↑																												
<u>계약일</u> (2013.1.1)	<u>최초 입원일</u> (2013.3.1)	(2014.2.28)	(2014.5.29)	(2012.5.29)																													
		2014.3.1.부터	2014.5.30.부터	2012.5.30.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보상제외																													



담보종목	보상하는 사항						
(3) 질병입원	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 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 고 있는 상태에서 <u>입원</u>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 후 5년이 지나는 동안(<u>계약</u>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 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⑨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갱신에 따 라 최초 청약일부터 보험계약의 연속되는 기간이 5년을 지난 것을 말하며 제1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u>계 약</u>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4) 질병통원	① <u>회사</u>는 <u>피보험자</u>(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u>에 <u>통원</u>하여 치료를 받 거나 <u>처방조제</u>를 받은 경우에는 <u>통원의료비</u>로서 매년 <u>계약</u>해당일로부터 1년 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u>외래제비용</u>, <u>외래수술비</u>) 및 <u>처방조제비</u> 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보 상 한 도</th></tr> </thead> <tbody> <tr> <td>외래</td><td>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u>비급여</u>^{주1)}’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 문 180회 한도)</td></tr> <tr> <td>처방 조제비</td><td>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u>비급여</u>^{주1)}’ 의 합계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u>처 방조제비</u>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td></tr> </tbody> </table> 주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주2) 외래 및 <u>처방조제비</u>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 <u>비급여</u> ^{주1)} ’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의 보험가입금액 ^{주2)}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 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 <u>비급여</u> ^{주1)} ’ 의 합계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u>처 방조제비</u> 의 보험가입금액 ^{주2)}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 <u>비급여</u> ^{주1)} ’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의 보험가입금액 ^{주2)}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 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 과 ‘ <u>비급여</u> ^{주1)} ’ 의 합계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u>처 방조제비</u> 의 보험가입금액 ^{주2)}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담보종목		보상하는 사항			
(4) 질병통원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준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택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1만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 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②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통원</u>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u>통원</u> 치료에 대하여는 <u>보험기간</u>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u>처방조제비</u>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동일회사 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담보종목	보상하는 사항				
(4) 질병 <u>통원</u>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계약일 (2013.1.1)	↑ 계약해당일 (2014.1.1)	↑ 계약해당일 (2015.1.1)	↑ 계약 종료일 (2015.12.31)	↑ 보상종료 (2016.6.28.)
	③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u>의료기관</u> 에 2회 이상 <u>통원</u> 치료시(하나의 질병으로 <u>약국</u> 을 통한 2회 이상의 <u>처방조제</u> 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 <u>계약 전</u>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⑤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국민건강보험법</u> 또는 <u>의료급여법</u> 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u>통원의료비</u>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u>처방조제비</u> 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u>처방조제비</u> 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병원</u> 또는 <u>약국</u> 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u>통원의료비</u> 를 계산합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u>계약</u> 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최초 청약일부터 보험계약의 연속되는 기간이 5년을 지난 것을 말하며 제1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u>계약</u>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장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해입원	① <u>회사</u>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u>입원의료비</u>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u>수익자</u>의 고의. 다만, 그 <u>수익자</u>가 보험금의 일부 <u>수익자</u>인 경우에는 그 <u>수익자</u>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u>수익자</u>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u>계약자</u>의 고의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고의. 다만,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그러나 <u>회사</u>가 보상하는 <u>상해</u>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정당한 이유없이 <u>입원기간</u> 중 <u>의사</u>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u>회사</u>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u>회사</u>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u>상해</u>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u>상해</u>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③ <u>회사</u>는 아래의 <u>입원의료비</u>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u>본인부담금상한제</u>)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u>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u>)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u>상해</u> 치료를 목적



담보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u>상해입원</u>	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u>상해</u>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u>의사</u>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2) <u>상해통원</u>	① <u>회사</u>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u>통원의료비</u>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u>수익자</u>의 고의. 다만, 그 <u>수익자</u>가 보험금의 일부 <u>수익자</u>인 경우에는 그 <u>수익자</u>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u>수익자</u>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u>계약자</u>의 고의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u>통원</u>한 경우. 그러나 <u>회사</u>가 보상하는 <u>상해</u>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정당한 이유없이 <u>통원기간</u> 중 <u>의사</u>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u>회사</u>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담보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2) 상해통원	지 아니합니다. ② <u>회사</u>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u>상해</u>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u>상해</u>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③ <u>회사</u>는 아래의 <u>통원의료비</u>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u>본인부담금상한제</u>)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u>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u>)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u>상해</u>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u>상해</u>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담보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u>의사</u>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3) 질병입원	① <u>회사</u>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u>입원의료비</u>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u>수익자</u>의 고의. 다만, 그 <u>수익자</u>가 보험금의 일부 <u>수익자</u>인 경우에는 그 <u>수익자</u>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u>수익자</u>에게 지급합니다. 2. <u>계약자</u>의 고의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정당한 이유없이 <u>입원기간</u> 중 <u>의사</u>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u>회사</u>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u>회사</u>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u>입원의료비</u>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u>입원</u>한 경우(000 ~ 099) 4. 선천성 뇌질환(Q00 ~ 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 ~ K62) ③ <u>회사</u>는 아래의 <u>입원의료비</u>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u>본</u>



담보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3) 질병입원	<u>인부담금상한제</u>)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u>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u>)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u>의사</u>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① <u>회사</u>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u>통원의료비</u>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담보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4) 질병통원	1. <u>수익자의 고의</u>. 다만, 그 <u>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u>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u>수익자에게</u> 지급합니다. 2. <u>계약자의 고의</u>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u>.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u>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u> 정당한 이유없이 <u>통원기간 중 의사</u>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u>회사</u>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u>회사</u>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u>통원의료비</u>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u>(000 ~ 099) 4. 선천성 뇌질환(Q00 ~ 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 ~ K62) ③ <u>회사</u>는 아래의 <u>통원의료비</u>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u>본인부담금상한제</u>)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u>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u>)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담보종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4) 질병통원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u>의사</u>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제 4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조(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



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호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8조(계약의 무효)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담보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5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1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함



니다.

1.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국내거주자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또는 국외거주자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항공기나 선박에서 내리기 전과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하는 교통수단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주거지에, 국외거주자인 경우 출국을 위한 항공기나 선박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까지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24시간을 한도로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 ⑦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5조(계약의 성립), 제1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0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2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4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0조(계약전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18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19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7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함



니다)하거나 이론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1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1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회사에게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8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5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27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수익자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9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제30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제2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날에 해당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9장 분쟁조정 등

제3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어풀이>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상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계약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약사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됨
약국	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조산원은 제외)
입원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을 말함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구성됨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용 어	정 의
	의한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외래수술비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처방조제비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를 말함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말함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를 말함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보험법 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료급여법 상 본인부담금 보 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상대상의료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보상책임액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회사부담비율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국내여행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부부계약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를 보통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족계약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본인의 가족을 보통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③ 제2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단체중 하나의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가.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 제3종 단체

제1종 및 제2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경우에는 대상 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계약은 제외합니다)

가.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다만, 노사관계가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합의절차)에 의할 것.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제1항의 나호 및 다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해야 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단체의 구성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가입금액)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종 단체의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별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라도 같은 직명 또는 직급에 속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금액은 각각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명 또는 직급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증가, 감소, 교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2.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 제2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단체의 규약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등)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등)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가입금액)에도 불구하고 제2종 및 제3종 단체의 경우에도 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등)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계



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국내여행을 회사가 제3조(국내여행자의 통지)의 통지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 ①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자

②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에서 정한 단체의 대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① 여행업자가 알선, 주최한 국내여행자

②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에서 정한 단체 소속의 국내여행자

제2조(보험료)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예상 국내여행자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국내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1항의 추정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3조(국내여행자의 통지)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청약사항을 인터넷, 팩스, 기타 통신의 수단 및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적용특칙)

①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② 이 계약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의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확인 및 보상방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민간법인 또는 단체가 정관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체결하는 단체보험계약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자가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3. 해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해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포괄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정산)

회사는 포괄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보험료 정산기간)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의 보험계약기간 동안 매 3개월, 6개월 또는 1년 중 계약자와 회사가 정한 기간마다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2조(보험료)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 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국내여행자수 및 보험가입조건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국내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 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3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을 밑돌 수 없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포괄계약 보험기간 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포괄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은 계



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환율적용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 ① 보험료 : 청약일
-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 ⑤ 보험금 : 지급일

제2조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에이스손해보험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